

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(이학영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0201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28.

발 의 자 : 이학영 · 한민수 · 임미애
이건태 · 김영배 · 박 정
김주영 · 박민규 · 전용기
김성범 · 곽상언 · 윤종균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스톡홀름협약 및 미나마타협약에 규정된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·수출입·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나, 예외적으로 취급이 허용되는 물질의 취급 현황이나 국제협약에 따라 새롭게 등재가 논의되는 후보물질의 유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음. 또한, 배출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이후 개선조치가 완료되었을 때 이를 해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행정행위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있음.

이에 예외적으로 허용된 용도로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·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전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며, 국제협약상 후보물질 등을 포함한 잔류성오염물질의 취급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국민

의 건강증진과 환경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13조, 제13조의2 신설, 제16조 등).

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2조제4호 및 제5호에”를 “제2조제5호에”로, “제한물질·금지물질과”를 “금지물질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2조제4호 및 제5호에”를 “제2조제5호에”로, “제한물질·금지물질과”를 “금지물질과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1항 단서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, 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함량, 주요 용도, 연간 취급예정량 등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제2장에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3조의2(잔류성오염물질의 취급 실태조사 등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취급현황 등을

확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잔류성오염물질

2.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 또는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에서 선별기준이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스톡홀름협약에 등재하기 위하여 제안한 물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물질(이하 “후보물질”이라 한다)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조, 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 및 후보물질의 취급현황과 용도, 제13조제5항에 따른 신고 대상 물질의 선정과 관련하여 제조·수입·사용하는 자 등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제1항·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, 대상,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“공표의”를 “사용중지명령의 해제요건과 제5항에 따른 공표의”로 한다.

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중

지명령을 받은 배출시설이 개선조치를 거쳐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.

제31조제2항제4호 중 “검사에”를 “관계 서류, 시설, 또는 장비 등의 검사에”로 한다.

제34조제2호 중 “제13조제5항을”을 “제13조제7항을”로 한다.

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3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제조·수입 또는 사용한 자
2.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1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, 수입, 사용신고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, 수입, 사용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3조제5항·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·수출입·사용의 금지와 제한)	제13조(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·수출입·사용의 금지와 제한)
① 누구든지 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[스톡홀름협약 부속서에 이(A)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을 말하며,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·금지물질과 「농약관리법」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. 이하 “취급금지 잔류성오염물질”이라 한다]을 제조·수출입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	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제2조제5호에----- 금지물질과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1.·2. (생 략)	1.·2. (현행과 같음)
② (생 략)	② (현행과 같음)
③ 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[스톡홀름협약 부속서 비(B)에 규정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과 미나마타협약에 규정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을 말하며,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2조제4호 및	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제2조제5호에-----

제5호에 따른 제한물질·금지물질과 「농약관리법」에 따른 농약은 제외한다. 이하 “취급제한 잔류성오염물질”이라 한다]
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조·수출입 또는 사용할 수 있다. 다만, 염소 알칼리 생산시설로부터 발생된 수은은 제조·수출입 또는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1. ~ 4. (생략)

④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---금지물질과---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제1항 단서 또는 제3항 본문에 따라 잔류성오염물질을 제조, 수입 또는 사용하려는 자는 함량, 주요 용도, 연간 취급 예정량 등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⑥ 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

⑤ · ⑥ (생 략)

<신 설>

야 한다.

⑦ · ⑧ (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)

제13조의2(잔류성오염물질의 취급 실태조사 등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의 취급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잔류성오염물질

2. 스톡홀름협약에 따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 또는 스톡홀름협약 당사국에서 선별기준이 충족하였다고 판단하여 스톡홀름협약에 등재하기 위하여 제안한 물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 물질(이하 “후보물질”이라 한다)

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제조, 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.

제16조(개선명령·사용중지명령
및 폐쇄명령) ① ~ ③ (생
략)

<신 설>

④ (생 략)

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잔류성오염물질 및 후보물질의 취급현황과 용도, 제13조제5항에 따른 신고 대상 물질의 선정과 관련하여 제조·수입·사용하는 자 등에게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④ 제1항·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, 대상, 내용,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16조(개선명령·사용중지명령
및 폐쇄명령) ① ~ ③ (현행과
같음)

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본문 또는 제3항에 따라 사용중지명령을 받은 배출시설이 개선조치를 거쳐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명령을 해제할 수 있다.

⑤ (현행 제4항과 같음)

⑤ 제1항·제3항에 따른 사용 중지명령·개선명령과 제4항에 따른 <u>공표의</u> 기준·방법 및 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 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	⑥ ----- ----- ---<u>사용중지명령의 해제요건과</u> <u>제5항에 따른 공표의</u>----- ----- ----- --.
제3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(생략)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 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한국환 경공단법」에 따른 한국환경공 단 등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1. ~ 3. (생략) 4. 제29조제1항에 따른 출입, 시료 채취 및 <u>검사에</u> 관한 업 무(제14조제3항에 따라 배출 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 거나 제18조제1항에 따른 잔 류성오염물질 배출원·배출량 조사를 하는 데 필요한 경우 만 해당한다) 제34조(벌칙) 다음 각 호의 어느	제31조(권한의 위임·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4. ----- -----<u>관계 서류, 시설,</u> <u>또는 장비 등의 검사에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제34조(벌칙) -----

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1. 1의2. (생략) 2. 제13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아 수출한 자 3. ~ 6. (생략) 제37조(과태료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 <신설> <신설> 1. ~ 3. (생략) ② ~ ⑦ (생략)	----- ----- -----. 1. 1의2. (현행과 같음) 2. 제13조제7항을----- ----- ----- 3. ~ 6. (현행과 같음) 제37조(과태료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제13조제5항 또는 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고 제조·수입 또는 사용한 자 2.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. ~ 5. (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) ② ~ ⑦ (현행과 같음)
--	---